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1993. 3. 1. 개정 2000. 9. 1.
개정 2001. 9. 1. 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5. 6. 1.
 개정 2015. 8.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

②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학홍보처 직원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5.8.3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학입학 부정방지 대책수립 시행에 관한사항
2.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에 관한사항
3.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 참관에 관한사항
4. 대학입학 전형의 사후 자체감사에 관한사항 <개정 2015.6.1.>
5. 합격사정절차 및 사정결과 검토확인에 관한사항
6. 기타 입학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반업무 확인 점검에 관한사항

제4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위원 모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운영세칙은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개정 2013.7.1.>

제8조 삭제 <2013.7.1.>

제9조 삭제 <2013.7.1.>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 제2조(구성 및 운영) ②항의 입학처 명칭은 '입학홍보처' 로 개정한다.